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2024. 2. 29.)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권 하 나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4-17
- 나. 제안자: 안미자 의원 외 7인
- 다. 제안일자: 2024년 2월 16일(금)
-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4년 2월 20일(화)

2. 개정사유

출자·출연 기관의 평가의 활용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자·출연 기관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을 유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인용 법조문 정비(안 제14조)
- 나.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시 평가의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다.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 나. 입법예고: 2024. 2. 15.~ 2. 21.(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보고

- 동 조례 개정안은 2024년 2월 16일 안미자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안되어 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마포구가 직접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사항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상황을 개선하고 책임경영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임.
- 마포구의 출자·출연 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출자기관¹⁾은 없으며, 출연기관²⁾으로서 마포문화재단,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마포복지재단 총 3개 기관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표1> 마포구 출연 기관 현황

연번	법인명 (소관부서)	설치 근거법령	목 적	설립년도
1	마포문화재단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문화예술의 진흥과 그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2007년
2	마포인재육성 장학재단	-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지역핵심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함	2013년
3	마포복지재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구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함	2021년

1) 출자기관(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출자하여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는 기관

2) 출연기관(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 :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장학, 자선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³⁾에서 경영 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에서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각각의 평가방법 및 운영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의 목적인 성과중심의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보여짐.
- 제11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제12조(경영평가단 구성·운영), 제13조(경영평가단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4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 그러나, 성과중심의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평가 결과에 따른 합리적인 성과분배의 전제가 요구됨을 감안하여,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관별 성과급 지급의 근거로 활용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구청장이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요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요구에 대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조치요구에 따를 의무를 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이러한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평가의 활용 및 평가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조례의 제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개정안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14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에서는 인용된 법조문을 정비하였음.
- 안 제14조제1항제3호의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을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수정하였음.
- 안 제15조(평가의 활용)에서는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출자출연기관의 성과급 지급의 근거가 되며, 평가대상 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를 통하여 성과급 지급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료로 보여져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안 제15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진단을 시행하는 경우 평가 계획과 결과 등을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 국회는 법 제36조⁴⁾를 근거로 경영실적 평가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⁵⁾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국회에 대한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평가의 활용) ① 시장이 제16조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계획과 결과 등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6조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출연 기관별 성과급 지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급 지급률 등에 대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안 제16조(시정명령 등)에서는 구청장이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및 확인·점검과 조치사항 보고, 이행상황의 확인·점검하도록 규정한 바, 관리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임.
-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중 “평가의 활용” 또는 “시정명령 등”의 규정을 조례에 명시한 구는 강동, 노원 등 8개 구⁶⁾임.
- 이와 같이 살펴본 바, 본 개정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의 책임경영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더불어, 경영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여 성과중심의 경영체계를 통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강동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조례의 제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